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-0(동인동)

참여연대 귀하

110-043

서울고등검찰청

2015. 5. 20.

수 신 참여연대

귀하

발 신 서울고등검찰청

제 목 항고사건처분통지

검 사 김현철



이건희 외 35명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.

처 분	사 건 번 호	2015 고불항 제 2676 호
	년 월 일	2015. 5. 20.
	결 과	<p>결정주문 : 항고기각</p> <p>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 이 유 : 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/p>

비 고

항고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[통합 안내문]

안 내 문

■ 재정신청

1. 의의

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(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)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2. 신청 및 절차

가. 신청권자

- 고소인 (범죄 피해자 등 형소법상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)
- 형법 제123조(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), 제124조(직권남용체포, 직권남용감금), 제125조(독직폭행, 독직가혹행위), 제126조(피의사실공표), 「공직선거법」 제273조(재정신청)에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

*** 재정신청권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.**

나. 처리절차

-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십시오.
-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정신청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고,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.

(통지서 수령 →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불기소처분 검찰청에 재정신청서 제출 → 고등검찰청 경유 → 고등법원)

3. 비용부담

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등 일정한 경우,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(형사소송법 제262조의3,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, 제122조의4),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증인·감정인·통역인·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·여비·숙박료·감정료·통역료·번역료
-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,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
-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
-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·여비·숙박료
-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
-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

■ 재항고

1. 의의

항고를 한 고발인(재정신청 가능한 고발인 제외)이 검사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2. 신청 및 절차

가. 신청권자

- 고발인(예: 뇌물공여 등 고발인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)

나. 처리절차

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재항고장을 접수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에 송부하고,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.

(통지서 수령 →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 제출 → 대검찰청)